

# 지식사회의 저작권

- 정보공유의 관점에서 본 저작권법 -

## Copyright in the Knowledge Society: Copyright Law Relating to Information Sharing

윤 선 영(Sun-Young Yoon)\*

### 목 차

- |                    |                  |
|--------------------|------------------|
| 1. 서언              | 3.2 정보의 디지털화와 전송 |
| 2. 정보센터와 저작권       | 3.3 정보제공 관련 시행령  |
| 3. 정보공유와 저작권법      | 4. 결언            |
| 3.1 정보의 디지털화와 관련용어 |                  |

### 초 록

지식사회에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각 도서관이 수행하는 정보의 디지털화 및 이용자에게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 관련하여 개정된 저작권법의 내용을 검토한다. 그리고, 도서관 등은 이와 같은 법적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것인지, 도서관 자체적으로 무엇이 변화되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한다.

키워드: 저작권법, 정보공유, 정보센터, 디지털화, 전송

### ABSTRACT

This study is to analysis copyright law to relate online transmission and digitised of information in order to promote information sharing in knowledge society. The regulations on the copyright law revised in December 1999 relating to digital information and online transmission for fair use. It suggest to draw up a plan at legal change and what is the library.

\* 삼인 C&C(주) 연구위원, 전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겸임교수  
접수일자 2000년 12월 4일

## 1. 서언

지식사회는 정보가 사회의 주체적인 역할을 하게 된 사회로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정보를 접하면서 생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식으로부터 창출된 정보는 또 다른 지식으로 변환하고 그 지식으로부터 정보가 만들어지는 순환작용을 이루고 있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성격의 정보가 정보를 가진 사람에 따라 특별하고 유익한 지식으로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보의 보편화는 정보와 가장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는 도서관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도서관에 입수되는 자료 즉 정보원의 유형도 그리고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도 변하게 하였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컴퓨터의 발명과 함께 세계 역사에 대 전환기를 가져오게 하였으며, 그 동안 축적되어 온 정보와 지식을 보다 많이 빠른 속도로 일반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컴퓨터의 급속한 성장은 이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지적욕구를 총족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고도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시간에 자신이 편리한 장소에서 입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컴퓨터와 통신에 의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은 인쇄 매체에 의해 유통되던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정보의 창작자 즉, 원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하였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는 디지털 환경 하에서 저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개정에 즈음하여, 용어의 정의 및 저작재산권의 제한범위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부분적으로 개정 또는 신설하였다. 이 개정법령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지난 7월 27일에 관련 시

행령이 공표, 발효되었다. 이와 같은 법적 변화와 도서관 등이 정보이용과 관련하여 어떤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도서관 자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인지 등에 관한 관점에서 개정한 저작권법 중 관련 내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 2. 정보센터와 저작권

도서관 등 정보센터에서 자료를 구입할 때는 보다 많은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가 크다. 이용되지 않는 정보는 단순히 종이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본래의 의미대로 따르면 영리 목적이 아니고 학술적인 지원을 위한 것이고 개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라는 주장으로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널리 많은 이용자에게 제공하여도 될 것이다. 그러나, 아이디어의 표현 방법이 달라짐에 따라 저작권이 논의되어야 하는 현행 법의 범위에서는, 일본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디지털화권' 또는 '데이터권'을 인정하는 방법이 강구되지 않는 한은 전문을 디지털화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키게 된다. '디지털화권'의 제정을 반대하는 의견은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면 이런 권리는 무의미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그것은 이미 1차적 저작물의 창작활동이 시작되었지만 점차 2차적 디지털저작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1차적 디지털 저작물이란 입력단계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직접 창작물을 기록하여 축적된 저작물로서 그 자체가 창작성(originality)을 갖게 되기 때문에, 입력 즉 등록과 동시에 저작권의 보호가 될 수 있는 조치가 되어야 한

다. 예를 들자면 전자잡지 또는 전자소설 등이 있다. 2차적 저작물이란 인쇄매체로 존재하는 저작물을 스캐너 또는 키보드에 의한 입력 등으로 컴퓨터에 재입력하므로서 생성되는 저작물을 의미한다. 디지털 도서관의 구축과 함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디지털은 기존에 인쇄매체로 소장하고 있던 저작물들을 전자매체의 형태로 변환하고자 하는 상황으로서, 2차적 디지털 저작물을 생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화가 저작물을 단순히 기계가 인지하여 축적할 수 있도록 코드화하는 것이라고 일축하기에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표현형식에 있다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더욱기, 우리 나라처럼 도서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는 대다수의 정보가 미국이나 일본 등의 저작물인 현실은 이런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미국 등 저작물이 대량으로 생산되는 국가에서는 저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주고 이용자에게도 편의를 주는 복제권기구를 설립하여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에 기여하고 있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저작권법도 그 변화에 부응하여 개정, 보완되고 있지만, 저작권법은 이용자가 저작물을 사용할 때마다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도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허용범위도 명시하고 있다. 이 허용범위에 해당하는 저작물의 사용을 '공정 사용' (fair use)이라고 하는데,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관점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이다. 이와 같이 저작자의 창작적 노력의 결과로 만들어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보호하는 범위와 경우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지만, 동

시에 저작권법은 이용자가 저작자에게 저작물을 사용할 때마다 허락을 받지 않고서도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허용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이 허용범위에 해당하는 저작물의 사용허락에 대하여 우리 저작권법은 '제6절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라고 제22조 내지 제35조로 규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 저작물을 사용하여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어느 경우에도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며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적인 상황은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함에 있어서 모든 소장자료를 소유자인 도서관의 임의로 디지털화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우선 부딪히게 한다. 인쇄매체의 자료인 경우에는 구입 당시에 저작권료를 일단 지불한 것이므로 도서관에서는 법이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에 대해 복제 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보를 디지털화 하는 것은 인쇄매체 정보를 취득하였다고 해도 원저작자의 허락이 없이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도서관이 자체적으로 발행한 저작물만이 디지털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도서관의 구축에 있어서 현재의 제도에서는 이것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는 점이다.

### 3. 정보공유와 저작권법

공정사용이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전자도서관 시대에 대응하는 관점으로, 이번에 개정된 저작권법의 내용에는 디지털 환경에서 전자도서관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용어의 정의 및

정보의 디지털화에 대한 조항도 신설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개정한 법 조항과 이후 공표한 관련 시행령의 내용이 현재의 우리 여건에서 도서관 등이 전자화를 추진함에 있어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도서관 등이 소장하고 있는 원문정보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향후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저작권법 및 시행령에 어떻게 대응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지 또는 현실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항목별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 3. 1 정보의 디지털화와 관련용어

#### [제2조] 용어

9의2 전송 :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14조] 복제

인쇄 · 사진 · 복사 · 녹음 · 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각본 · 악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공연 · 실연 또는 방송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 [제18조 2] 전송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우선, “전송”의 정의에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

는 것’이라는 의미는, 실제로 도서관 등이 우편은 물론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 기기를 이용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하여 정보를 송신하고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정의에 의하면 도서관 등이나 개인 등이 이용자(상대)의 요구에 응하여 허용되는 여건에 따라 편리한 방법으로 정보를 송신할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특히, 개인보다는 도서관 등이 자원공유를 활성화하고 적극 추진해야 하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정보교류 및 정보제공에 대하여 그 방법의 범위를 일단 법적으로 허용한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실제로는 도서관 등이 전송의 개념 정의만으로 정보를 편의에 따라 또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송신하여 이용에 제공하여도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도서관 등이 “전송”을 함에 있어서 적법하게 정보를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조치를 스스로 강구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다음으로 “복제”를 정의함에서 ‘인쇄 · 사진 · 복사 · 녹음 · 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라는 개정 내용은 그 밖의 방법이 컴퓨터와 같은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컴퓨터 등의 기기를 사용하여 기기에 저장하거나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전자매체로 제작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복제”가 의미하는 범위가 이전에 흔히 ‘복사’라고 알고 있는 복사기를 이용한 복제(광의: reproduction, 협의: recopy)의 일반적인 개념으로부터, 컴퓨터 등의 기기에 저장하는 것 즉, 디지털화 하는 것 까지도 정보를 다른 표현방법으로 만든 것으로

서 복제의 범위를 확실하게 규정한 것이라 본다.

그리고, “전송권”은 저작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권리로서 저작자에게 인정하는 권리로 신설한 것이다. 컴퓨터통신 등 네트워크를 통해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우에 저작자의 이용 허락을 받도록 하기 위해 저작재산권에 전송권을 추가하였다. 디지털 도서관 등에서 이용자의 요구에 응하여 저작권이 있는 원문정보를 관외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복제권 및 전송권에 관한 권리처리를 명확하게 해 두어야 한다. 이것은 저작(권)자에게는 또 하나의 권리가 추가된 것이라 할 수 있는 반면에, 정보이용자 특히 정보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정보를 관리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더 많은 제약이 추가된 것이다. 그런데, 도서관 등이 관리하고 있는 대부분의 정보는 학술정보로서 조사·연구 목적으로 이용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만을 고려한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한다.

정부는 “전송권”的 신설과 관련하여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的 설립을 허가하였다. 세계적으로 복사권관리기구는 미국의 CCC(Copyright Clearance Center)와 일본의 “일본복사권센터”를 비롯하여 30개국 32단체가 국제복사권기구연맹(IFRRO)의 회원으로 설립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저작물의 효율적인 이용과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저작재산권 중에서도 비중이 큰 복제권에 관련한 집중관리기구의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다. 이번에 설립된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기존의 6개 단체를 발기인으로 시작하였다. 센터가 설립된 것은 국내에서 발표된 정보를 이용함에 있어서 저작(권)자의 권리

를 침해하지 않고 이용자가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차적인 이유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용하고 있는 학술정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선진국(특히 미국과 일본)에서 발표된 정보를 이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목적일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본 목적으로 설립된 센터의 설립취지 및 운영에 대응하여 도서관 등의 학술정보를 이용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 3.2 정보의 디지털화와 전송

#### [제23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 (1)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그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표된 저작물을 방송하거나 복제할 수 있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제82조 제1호에 의한 보상금의 기준에 의해 정하여 고시한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이나 복제를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 1. 7.).

[제24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 영화, 신문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 배포,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제25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 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27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1)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과 도서, 문서, 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 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도서관 등'이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관된 자료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 할 수 있다.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 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를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관 등이 자료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저작물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2) "도서관 등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당해 시설과 다른 도서관 등에서 이용자가 도서 등을 열람 할 수 있도록 이를 복제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관 등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 점자에 의한 복제

(1) 공표된 저작물은 앞을 못보는 사람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다.  
(2) 앞을 못보는 사람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서는 앞을 못보는 사람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녹음 할 수 있다.

사적이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범위에서 단서 조항을 부가하였다. 이것은 공중용의 복사기로 복사하는 경우에 이용자는 저작권자 및 출판권자의 사용허락을 받아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복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적복제 보상금제도"의 도입으로 공중용 복사기에 의한 복제는 사적복제의 범위에서 제외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불법복제를 방지하므로 저작자와 출판사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제도이다. 이와 같이 저작자 및 출판자로부터 권리와 신탁 받고 이용자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의 설립이 필요하게 된다. "한국복사전송권 관리센터"는 저작권자로부터 권리를 신탁 받고

대리인의 입장에서 복사기 운용자나 전자도서관과 '복사이용 허락계약' 및 '전송이용 허락계약'을 체결한다. 그리고, 이 계약에 의해 징수한 사용료를 센터가 일괄적으로 모아서 권리를 선택한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분배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저작권 집중관리기구는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개자로서 역할을 하는 단체이며,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가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우리 나라의 저작권 집중관리기구로 발족한 것이다.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의 공정사용을 인정하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중 도서관 등에 대한 면책범위에 있어서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28조의 (2)항을 신설하였다. 이는 도서관이 관내 이용자의 열람만을 목적으로 도서 등의 저작물을 컴퓨터 등에 의해 복제하거나 도서관간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공정사용으로 인정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조항의 신설은 도서관 등이 전자도서관 구축을 목표로 자판에 소장하고 있는 원문정보를 디지털화 할 수 있고, 다른 도서관의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전송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관내의 이용자 그리고 다른 도서관의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이라는 부분에 대해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기관이 LAN을 통해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환경에서 기관 내 도서관 소장정보의 검색 및 전송이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관외 이용자에 대한 전송 및 관내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한 출력과 전산기억장치에 의 저장 등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도서관

간에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전송을 허용한다는 부분은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해당 시설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유념하여야 한다. 이것은 저작물의 복제물이 관외에서의 이용 즉, 특정 시설이외의 관외로 원문정보가 복사 전송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웹 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저작권이 있는 원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로부터 복제권 및 전송권 등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는 사전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3.3 정보제공 관련 시행령

#### [제3조] 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법 제2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 등"이라 한다)에 고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복제하는 경우에는 국립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도서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 도서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정보원 및 연구개발정보센터의 도서관에 한한다.

1.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및 특수도서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특수도서관을 제외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도서, 문서, 기록 그 밖의 자료를 보존, 대출 기타 공중

- 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과 유사한 시설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도  
서, 문서, 기록 그 밖의 자료를 공중의 이  
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지정하는 시설.

[제3조의 2]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

법 제28조 2항 후단에서 “이 법에 의하여 보  
호되는 권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불법이용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술적 조치.
- 가. 당해 시설과 법 제28조 2항의 규정에 의  
한 다른 도서관 등의 이용자가 컴퓨터 등  
의 화면에 자료를 나타나게 하는 자료현  
시 외의 방법으로는 제28조 1항의 규정  
에 의한 도서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  
는 복제방지장치의 설치.
- 나. 당해 시설과 다른 도서관 등의 이용자 외  
의 자가 도서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  
는 암호화 조치.
- 다. 컴퓨터 등의 화면상의 자료현시 외의 방  
법으로 도서 등을 이용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
- 라. 판매용으로 제작된 전자기록매체의 이용  
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
2.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예  
방하기 위한 직원교육.
3. 컴퓨터 등에 경고표지의 부착.

[제4조] 앞을 못보는 사람들의 이용을 위한 녹  
음이 가능한 시설법 제30조 제2항에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지  
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  
리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
  - 가. 시각장애인 재활시설.
  - 나. 점자 도서관.
  - 다. 장애인 요양시설과 장애인 근로시설  
중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2. 교육법 및 특수교육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및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특수학  
급을 둔 각급 학교.
3.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  
는 단체에서 시각장애인의 교육, 학술 및  
연구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지정하는 시설.

저작권법 제28조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3조 (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  
설을 말하며, 제3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하는 것도 동 시행령 제4조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을 위한 녹음이 가능한 시설)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이다. 저작권법 제282조  
와 관련한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시설”이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명시  
된 각 관종의 도서관이 전부 해당 하였다. 그러  
나, 이번 저작권법 개정에 즈음하여서는 도서  
등의 디지털화를 법적으로 허용함에 있어서, 아  
나로그 형태의 정보이용보다 심각하게 저작자의  
권리침해가 예견되는 디지털 복제에 대하여 시  
행령에 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달리 규  
정하였다. 이를 해석함에 따르면, ‘국립도서관  
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 및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국립대학교, 교육대학교, 산업대학교, 전문대학교 등이 해당한다. 디지털 복제를 허용하는 도서관을 국립도서관 및 국가의 지원 하에 구축 중인 전자도서관 시행 도서관으로 한정하므로 전자도서관 구축의 원활한 지원과 저작자의 권리침해를 최소화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 등"이라 한다)에 고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복제하는 경우'를 국립대학과 국가전자도서관 구축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으로 한정한 것은, 실제 우리 사회에서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이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현실은 국립대학교 보다 먼저 전자도서관 구축을 시작한 사립대학교도 있으며, 시행령에 명시한 국립대학의 범주에 포함되는 많은 대학들이 예산부족 및 인식부족 등의 이유로 전자도서관에 대한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들은 기본적으로 국립기관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기관은 대부분이 첨단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는 특성상 자체적으로 그리고 자원공유를 목적으로 한 협약기관 간에 오래 전부터 단계적으로 전자도서관 구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지정은 도서관의 입장에서 시설지정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 4. 결언

지식의 보고로서,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존하고 관리하여 인류사회의 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도서관은 상징적인 이름이 될 것처럼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하여 왔다. 도서로 대표되었던 정보다발을 보존하는 것으로 출발하였던 도서관은 정보사회에서 정보를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정보제공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기능이 확대 되었다. 고도정보화사회 즉, 지식사회에서 도서관은 정보의 길잡이로서 기능을 수행하도록 달라지고, 도서관 직원은 본래의 도서관 기능을 수행하면서 정보전문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용자가 직접 정보를 입수할 때와는 달리 정보원에 접근하도록 안내하는 입장에서는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방법과 동시에 입수할 수 있는 정보의 한계까지 알려주어야 하는 전문가로서의 역량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우리의 환경은 정보 관리자나 이용자가 저작권에 관련된 법적 근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그저 막연하게 공공기관에서의 사용이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생각이 저작물을 복제와 인용에 의한 방법으로 쉽게 사용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정보전문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저작권법의 정신을 이해하고 저작권자와 이용자와의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마찰을 조정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오승조, 이해완 공저. 2000. 저작권법. 개정판.  
서울: 박영사.
- 이상정. 1996. 이용자를 위한 디지털 시대의 저  
작권. 계간 저작권, 35: 75-83.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0. 개정저작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설명회 자료. 서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0. 8. 9.
- 정상조. 2000. 인터넷과 법률. 서울: 현암사.
- 정찬모. 1998. 전자도서관의 법적문제. 정보통  
신정책, 10(23): 1-18.
- 宮下佳之. 2000. 新たな コンテンツ 流通形態  
と 著作権法. コピライト. 2000. 4.  
2-16.
- 大口一. 2000. 圖書館における複製サービス  
と 著作権. 圖書館雜誌, 94(2): 94-  
96.
- Lee, Jones C. 2000. デジタル圖書館にお  
ける ドキュメント・デリバリ. 情報管  
理, 42(11): 909-924.
- Edwards, J. & Tiwari, S. 2000.  
Policing copyright in the  
digital age. Copyright world, Mar. 2000, 14-17.
- Hart, M. 2000. The Future of  
copyright protection in the  
digital networked age. Copyright  
world, Dec. 1999/Jan. 2000, 17-19.